

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5,901호 1998. 9. 30

개 정 이 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신축주택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1998. 9. 16, 법률 제5561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20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인상됨에 따라 중산층의 세금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세금우대저축의 한도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할 때에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바, 1998년 5월 21일이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그 주택을 다시 분양받거나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 64조의3)

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20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인상됨에 따라 중산층의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의 한도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령 제76조의5 및 제 77조).

다. 폐기물재생처리업자·중고자동차매매업자 및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이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바, 앞으로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공제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령 제97조).

〈법제처 제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9제1항중 “토지·건축물”을 “토지, 건축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 하고, 동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40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수 법인간의 교환”이라 함은 3 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제5절에 제37조의11 내지 제37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11(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법 제40조의10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frac{\text{양도소득금액} \times [\text{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의 기준시가}]}{[\text{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②법 제40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0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다.

1. 제30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및 부채상환명세서

- 2. 제37조의3제20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 면제신청서와 동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또는 자구계획이행보고서
- 3. 제37조의7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 감면신청서 및 부채상환명세서
- 4. 제37조의10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기업구조조정계획서·구조조정사용명세서 및 구조조정사용 완료보고서

제37조의12(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40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차입금의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차입금의 상환·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상환 및 면제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13(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법 제40조의1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동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공매를 하였으나 유찰된 경우
- 2. 소송의 계류 등으로 인하여 처분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②법 제40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14(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0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의15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

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40조의15제3항 및 법 제111조의2 제7호의 규정은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증권투자회사가 당해 연도에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으로 같음한다.

④법 제40조의15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15(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법 제40조의1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라 함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제37조의1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7조의3제1항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37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6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1998년 5월 2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획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법 제6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 2.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76조의5제1항제1호 나목중 “1천8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77조제2한제3호중 “1천8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97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제4항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통령령 제15860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중개정령 부칙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

되,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5 및 제77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액가계저축 등에 대한 적용례) 제76조의5 및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97조제3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중고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소액가계저축 등의 기존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76조의5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 또는 소액채권저축에 가입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전에 불입한 저축금액과 이 영 시행에 따른 저축한도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불입하는 경우 당해 추가분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당초 가입일을 동 추가불입분의 가입일로 본다.